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춘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59

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이춘석 · 윤준병 · 이학영

한병도 • 이연희 • 문진석

정준호 • 박희승 • 김윤덕

윤종군 • 백선희 • 위성곤

한민수 이성유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,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,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, 그 밖의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자·사용자 대표, 사회복지분야 전문가, 변호사 중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.

이에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

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). 법률 제 호
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중 "30명"을 "35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다만,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, 같은 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대표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·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1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	제21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		
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3			
명과 행정안전부장관, 고용노동			
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국토			
교통부장관을 포함한 <u>30명</u> 이	<u>35명</u>		
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	3	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		
람으로 한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<u>2.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</u>		
	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		
	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		
	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		
	<u>사람</u>		
<u>2.</u> (생 략)	<u>3.</u> (현행 제2호와 같음)		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	4		
다. <u>다만</u> , 공무원인 위원의 임	<u>다만, 제3항제1호의 위원의</u>		
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,	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,		
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	같은 항 제2호의 위원의 임기		
관·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	는 대표자의 지위를 유지하는		
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	기간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		

<u>로 한다.</u>

⑤ ~ ⑨ (생 략)

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 각 목의 위원이 기관・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 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⑤ ~ ⑨ (현행과 같음)